

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65호

「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7일

금융위원회

### 「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#### 2. 주요 내용

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및 공인회계사등록부 상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변경(안 서식4, 5)

#### 3. 의견 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12. 7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공정 시장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금융위원회(공정시장과)

- 주소: (04520)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 1가)

- 전화: 02-2156-9916

- 팩스: 02-2156-9909

- 이메일: yocha@korea.kr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>지식마당>법령정보>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